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1월 08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서상열,
아이수루, 이민옥, 이소라,
, 이효원, 장태용, 정준호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출신 학생 및 대학 모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의 종류를 시장장학, 서울장학 I, 서울장학II 로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서울장학I를 신설하여 대학교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(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)로 정하며, 서울장학II 는 기존 복지장학금과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하되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의 기준을 서울장학1과 동일하게 규정함.(안 제3조 제2항, 제3항)
- 다.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.(안 제4조)
- 라. 장학금 수혜내용은 서울장학I은 학업장려금으로 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하고,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 는 기존 과 동일하게 등록금(수업료)으로 규정함.(안 제5조 제1항, 제2항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”을 “시장장학·서울장학 I·서울장학Ⅱ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장학금”을 “시장장학”으로, “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복지장학금”을 “서울장학Ⅱ”로, “곤란한 자로 하되,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”를 “곤란한 자(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경우)로”로 한다.

② 서울장학 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(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경우)로 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선발방법”을 “선발방법 및 지급 인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Ⅱ은 등록금(수업료)으로 한다.

② 서울장학 I 은 학업장려금(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으로 구분한다.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① <u>시장장학금</u>의 지급대상은 <u>서울시립대학교</u>(이하 “대학교“라 한다)의 재학생(신입생을 포함한다)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<u>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<u>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복지장학금</u>의 지급대상은 <u>대학교</u>의 재학생(신입생을 제외한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----- ----- ---- <u>시장장학·서울장학 I·서울장학II</u>-----.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① <u>시장장학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 (단서조항 삭제)</u></p> <p>② <u>서울장학 I</u>의 지급대상은 <u>대학교</u>의 신입생 중 <u>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</u>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(<u>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경우</u>)로 정한다.</p> <p>③ <u>서울장학II</u>----- -----</p>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장학금의 종류), 제3조(지급대상)제2항 및 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제2항을 개정,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 상

- 서울장학 I 신설(제2조, 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)

나. 전제

- 서울장학 I의 대상인원은 서울시립대 최근 3년간(21~23년) 신입생 중 소득 7구간 이하(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인 학생 평균 인원으로 전제
- 서울장학 I의 학업장려금은 서울시립대에서 기 운영 중인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금 지급 장학제도(형설장학 I)의 월별 지원금액(월30만원)과 동일하다고 전제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립대 최근 3년간 소득 7구간 이하 신입생 평균인원 및 서울시립대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금 지급 장학제도(형설장학 I)의 지원금액을 근거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510,000천원(연평균 10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서울장학 I 신설 (제2조, 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)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	소계(b)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□ 총 비용(b-a)	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
4. 덧붙이는 의견

- 서울장학 I의 대상 인원 및 지원금액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희선
 추계세제팀장 이정수
 추계분석관 박지영
 ☎ 02-2180-7952
 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장학금의 종류), 제3조(지급대상)제2항 및 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제2항을 개정,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≙ 510,000천원(연평균 10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서울장학 I 신설 (제2조, 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)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	소계(b)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□ 총 비용(b-a)		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
나. 서울장학 I 신설 = 지급인원 × 학업장려금 × 5년

$$= 340명 \times 300,000원 \times 5년 = 102,000천원$$

장학명	수혜자격	대상인원 (a)	학업장려금 (b)	소요예산 (a×b)
서울장학 I	대학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,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 (소득 7구간 이하)	340명 내외 (전체 신입생의 19%, 서울지역 신입생의 약70% 수준)	300,000원 (학업장려금)	102,000천원

※ 대상인원 :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신입생 중 소득 7구간 이하(중위소득 150%이하)인 학생
 평균 인원

※ 소득 7구간 이하 :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구분	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	기준 중위소득 비율
1구간	1,620,289원(이하)	30%
2구간	2,700,482원(이하)	50%
3구간	3,780,675원(이하)	70%
4구간	4,860,868원(이하)	90%
5구간	5,400,964원(이하)	100%
6구간	7,021,253원(이하)	130%
7구간	8,101,446원(이하)	150%
8구간	10,801,928원(이하)	200%
9구간	16,202,892원(이하)	300%
10구간	16,202,892원(초과)	-

※ 학업장려금 : 서울시립대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 장학금제도인 1)형설장학 I 의 월장학금액 (월30만원)으로 계산

1) 형설장학(I종)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* 월별일정액(월30만원)